

#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변경 안내

안녕하십니까?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.

선우회계법인 주황규

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과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. [소득세법 § 164[지급명세서의 제출], 같은법 § 164의 3[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]]

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\*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보험설계사, 학습지 방문교사, 방문판매원, 방과 후 강사, 기타모집수당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
미제출시 불이익 (가산세)이 있으니 변경된 제출주기를 확인하시고 소득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법인세법 § 75의기[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] ①, 소득세법 § 81의11[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] ①]

구 분	제출시기 (변경사항)									비 고	
	1분기	2분기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	
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	4월 말	7월 말	지급일 다음 달 말일[매월] [12.31.미지급분 12.31. 지급일 간주]								
간이지급명세서 (거주자의 사업소득)		7월 말	지급일 다음 달 말일[매월] [2019년 하반기 귀속 부터 지급일 기준]								
간이지급명세서 (근로)		7월 말	다음연도 1월말 [반기 근무분 →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] [2019년 하반기 귀속 2020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]								

※ 미제출시 불이익 (가산세)

☞ 미제출시 [불분명 등] 0.25%, 자연제출[1개월 이내] 0.125%



## 일용근로자

###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[일용근로자의 범위]

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"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.

#### 1.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

가.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

나.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

- (1)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업무
- (2)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, 사무·타자·취사·경비 등의 업무
- (3)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

#### 2.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(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

가.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

나.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

- (1)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업무
- (2)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

#### 3.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